

---

국외출장보고서

# 북유럽 국가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

2023. 10. 19.~ 10. 27.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 I. 출장개요

### ○ 목적

-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에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및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1896년 아동보호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2년 아동복지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최근(2023년 1월)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 regjeringen. no)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초기 개입을 강조한 노르웨이의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노르웨이 아동복지 서비스국(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 barnevernet)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 1918년 학교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한 스웨덴 출장을 통해 그 법 제정 이후의 난관 및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즉·학생 및 자녀 체벌금지법 이후 아동학대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전문가 면담을 하고자 하였음
- 문헌조사만으로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법률 및 제도에 대해 오랜 역사가 있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의 법 제정 이후의 난관 및 성과 파악에 한계가 있어, 직접 방문 및 자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제도 운영 및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었음

### ○ 기간

- 2023. 10. 19 - 2023. 10. 27.(7박9일)

###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노르웨이, 스웨덴
- UNIVERSITY OF BERGEN, 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barnevernet), Statens Barnahus Bergen & Stavanger, Save the Children Norway & Denmark,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 ○ 인적사항

-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 II. 출장내용

### 1. 세부일정

일자	세부일정	비고
19일(목)	[출발] 인천공항 출발 [도착] 노르웨이 베르겐 도착	
20일(금)	- UNIVERSITY OF BERGEN에서의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 베르겐 Save the Children에서의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 Statens barnehus Bergen 방문 - 스타방에르로 이동 - Statens barnehus Stavaner 방문	
21일(토)	- 자문회의 자료 정리 및 방문기관에 대한 자문회의 준비	
22일(일)	- 오슬로로 이동	
23일(월)	- 노르웨이의 아동복지 서비스국(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 barnevernet)에서의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24일(화)	- Redd Barna(Save the Children Norway)에서의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 코펜하겐으로 이동(RWI 최 근접 공항)	
25일(수)	- 스웨덴 분드로 이동 - 스웨덴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에서의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 코펜하겐으로 이동(RWI 최 근접 공항) - Save the Children Denmark 방문	
26일(목)	[출발] 코펜하겐(09:25)	
27일(금)	[도착] 인천공항(12:10)	

### 2. UNIVERSITY OF BERGEN 방문 및 심층면접

- 면담자 : Marit Skivenes 교수
- ‘전세계 아동보호시스템(Child Protection Systems Across the World)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스템 분야의 전문가인 베르겐대학의 Marit Skivenes 교수를 만나 아동학대보호 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 세계의 아동보호시스템(Child Protection Systems Across the World)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아동보호시스템의 글로벌 유형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조사하는 장기 프로젝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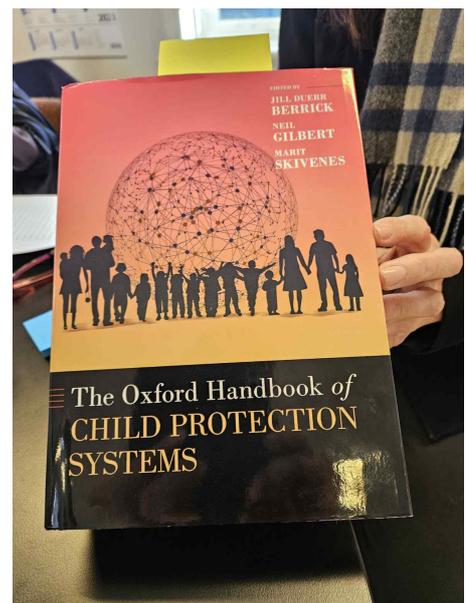
- 체벌금지법에 대한 인식

- 아동 양육과 관련된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체벌금지에 대해 90% 정도가 찬성하고, 영국은 60% 정도가 체벌금지에 찬성(최근 체벌금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유하기로 함)한다고 함

-> 체벌금지에 대한 인식전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노르웨이에서는 체벌금지법이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뚜렷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요소가 굉장히 적다고 함. 오히려 따돌림 왕따로 선생님과 상담하는 일은 있어도 체벌 문제로 선생님과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함(왕따 연구에 관심있으면 왕따 연구 전문가 연락처 알려 주겠다고 함). 또한 노르웨이인은 준법정신이 강해서 일단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 지킨다고 하며 아동보호법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어서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다고 함. 다만, 최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 이민 온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한국에서 이민 온 통역에 따르면 본인도 이민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안 된다는 말이고, 아이를 때리는 경우 처벌이 엄하다는 것이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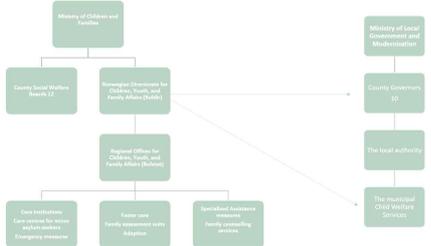
-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이 금년 초에 개정되었음

- 이 법의 목적은 건강과 발달에 해로울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 돌봄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 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 사랑, 이해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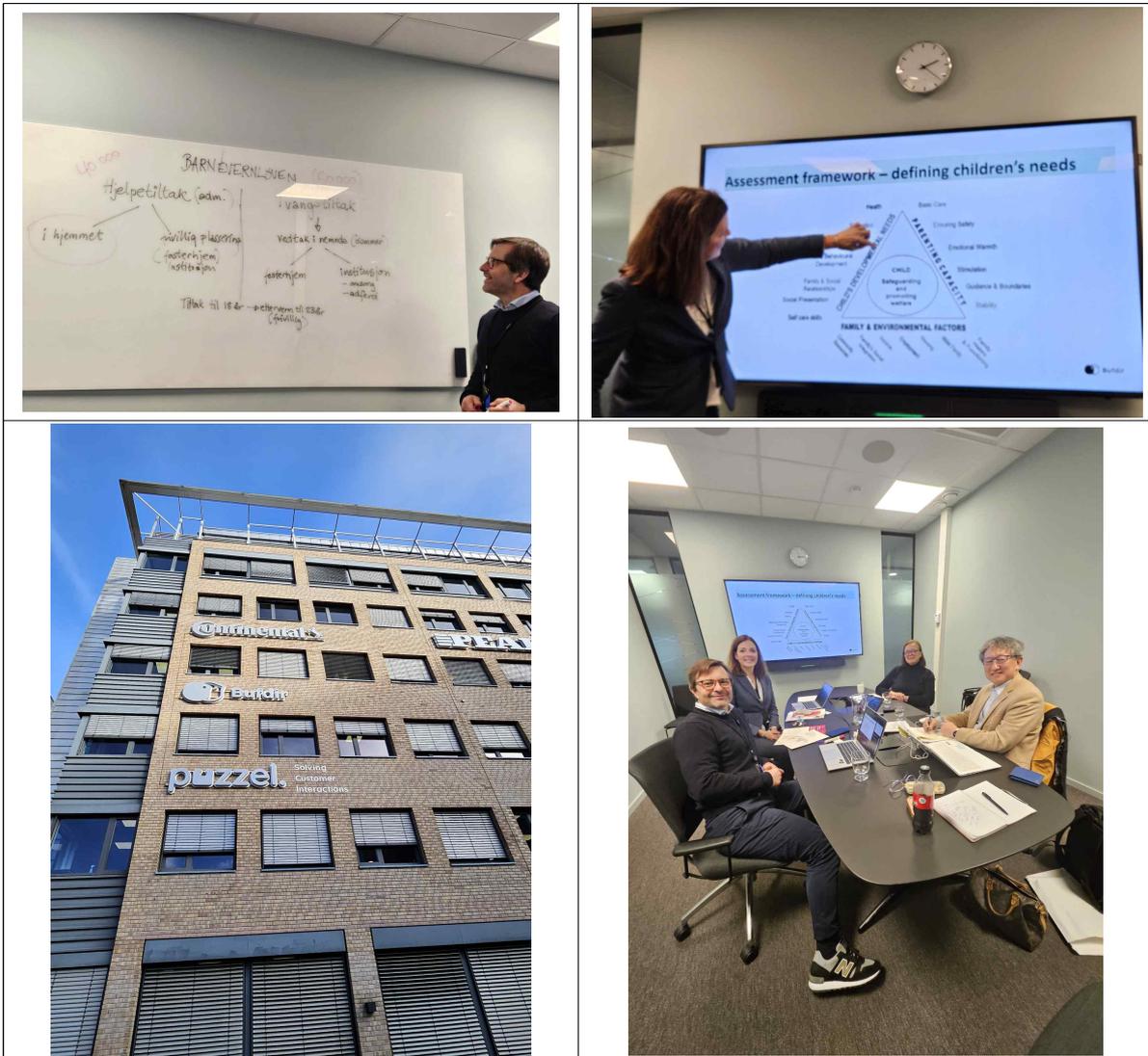


### 3. 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 barnevernet 방문 및 심층면접

- 먼담자 : Eli Ferrari de Carli(Senior Adviser,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Charlotte Stokstad(Deputy general director, : 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 (barnevernet) | Bufdir)  
Anders Prydz Cameron(fagdirektør, : 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 (barnevernet) | Bufdir)
- 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 barnevernet는 건강이나 발달 상 위험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임
-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 아동 복지 서비스, 가족 문제, 아동 발달, 종교 및 생활 태도 문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부처임
- 노르웨이에서의 주거형 소년 케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르웨이 아동 및 가족부를 주 부서로 한 아동복지 관련 조직과 역할 및 청소년에 대한 주거용 케어제도에 대해 설명드림(ppt자료 부록 참조)

 <p><b>Residential youth care in Norway</b></p>	<p><b>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b></p> 
<p><b>The legal position of children in Norway</b></p>	
<p><b>The legal position of children in child welfare institu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child welfare institution must provide children staying in the institution with <i>proper care and treatmen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is includes, among other things, giving the child protection and protection, clear frameworks to ensure safety and good development, follow-up of school and training offers and leisure activities, stable and good contact with adults, experience of mastery and being seen and heard, as well as teaching the child respect and tolerance.</li> </ul> </li> <li>The institution <i>must treat children with consideration and respect</i> for their personal integrity, and must safeguard the individual's legal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gulations concerning the specific content of the institution's responsibilities to the individual child have been issued (Bestillingsforskriften)</li> </ul> </li> <li>Children have the <i>right to participate in all matters</i> concerning them during their stay in a child welfare instit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institution must ensure that the <i>child's right to participation</i> is safeguarded in connection with planning daily life in the institution and in other matters that concern the child.</li> </ul> </li> <li>Children must be able to <i>decide on personal matters, move freely within and outside the institution's premises, communicate freely with others, including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and receive visits.</i></li> <li><b>Prohibition against use of physical and mental coercion and forc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is not permitted to forcibly medicate, isolate, use mechanical means of coercion or other mental or physical coercion or force to punish children or to provide care or treatment to the child.</li> <li>Certain forms of physical coercion and force may nevertheless be used pursuant to sections 10-3 and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ction 10-3. Use of mild forms of physical force based 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care of a child and safety and well-being, if it is clearly necessary in order to be able to provide the child with proper care. The institution may employ mild forms of physical force such as restraining the child briefly or holding the child by the hand. These kinds of measures may also be used if this is clearly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and well-being of everyone at the institution. [section 10-3]</li> <li>Section 10-7. Use of coercion in situations of acute danger</li> </ul> </li> </ul> </li> </ul>	<p><b>Section 10-14. Case processing and complaint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child and the parents may complain directly to the County Governor about individual <i>administrative decisions and violations of provisions in chapter 10</i> concerning rights and the use of coercion in institutions.</li> <li>Decisions concerning the use of coercion or interference with the child's personal integrity pursuant to <i>section 10-7, 10-8, 10-9 or 10-11</i> are individual administrative decisions.</li> <li>Decisions concerning intoxicant testing pursuant to <i>section 10-10</i> must be placed on record, and an explanation of the grounds for the decision must be provided</li> </ul>

- 노르웨이 헌법 제104조의 규정과 ' 유엔아동권리협약 ' 과 ' 유럽인권협약 ' 을 바탕으로 ' 아동법 ' , ' 가족카운셀링법 ' , ' 아동복지법 ' 을 통해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 을 근본적으로 고려하고, 아동 양육과 관련된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 아동복지법 ' 과 ' 아동법 ' 에서는 7세 이상의 아동과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어린 아동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4. Statens Barnahus Bergen & Stavanger 방문 및 심층면접

- 면담자 : Grethe Janicke Andersson(Senior Counsellor)
- 바르나후스(Barnahus)는 폭력 및 성적 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보호,

치유,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기관

- 베르겐의 바르나후스는 경찰서 산하에 있는 협력부서라고 함
- 아이가 법정에서 췌었을 때 아이니까 겁을 주거나 위화감을 느끼는 것도 아동보호법상 금지라서 중간자 역할을 세워서 이 사람이 변론을 다 할 수 있게 함
- 오랜기간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조사관이 아이들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술분석과 상담사 역할을 같이 하며, 이들은 진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야하면 이들이 아이를 대신해서 맞서서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함. 20년 전에 세 번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진술을 강요해서 아이들이 겁먹은 사건 이후로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안된다는 게 강조되었다고 함
- 이곳에는 아동복지교육자, 사회복지교육자, 경찰, 그리고 심리전문가들이 있음. 만약 심리치료사가 경찰인 경우에는 유니폼 입지 않고 사복 입고 근무하고 아이들에게 면담자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함. 이 사람이랑 너랑 면담을 하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면담을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가 놀라지 않게 경찰 제복 입고 상담하는게 아니고 사복 입고 면담을 한다고 함
-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데, 아동복지기관, 경찰, 바르나후스, 학교, 그리고 가정을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피해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어떻게 치료할건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대행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움을 줄 지 협의하되 아이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함. 일단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아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듣는데도 아이의 변호역할을 하는데 경찰이랑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만약 좀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면 이 사람이 중재시키는 역할도 함
- 한국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 중 하나는 일단 보육교사 한명당 담당하는 어린이가 많은데 어린이 중에는 감당이 안되는 아이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경우 노르웨이에서는 부모와 먼저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전문기관 도움이 필요하다며 전문의사를 만나게 하고 만약 자폐증세가 있다면 이 아이만 따로 일주일에 한 두번은 전문기관에서 사람이 와서 이 아이를 빼서 수업시간에 이 아이만 혼자 같이 놀아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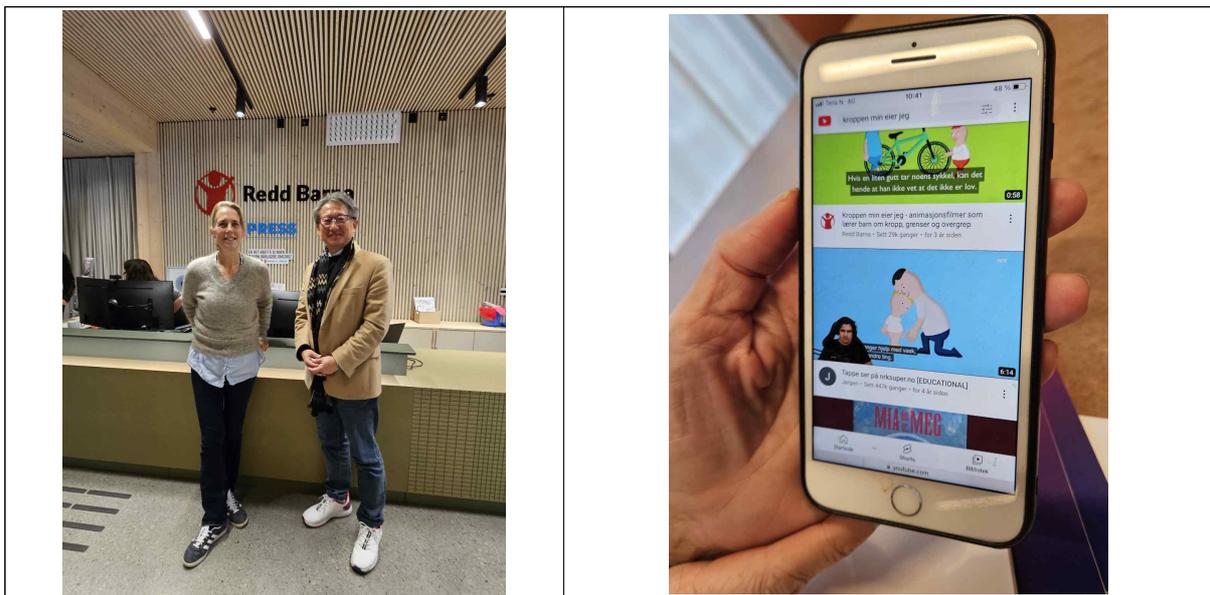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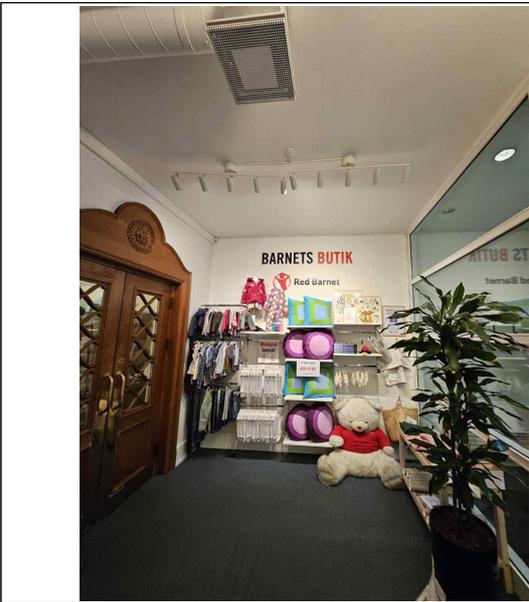
## 5. Save the Children 방문 및 심층면접

- 면담자 : Kaja Hegg(Save the Childrens domestic program)
- 세이브 더 칠드런 노르웨이는 1946년에 설립되었으며, 2022년~2024년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① 아동의 학교 복귀 및 양질의 교육 보장, ②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③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어린이를 지원, ④

빈곤 퇴치 및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라고 함

- 세이브 더 칠드런 덴마크는 ① 아동빈곤과 박탈 철폐, ② 폭력이나 성적 학대 예방, ③ 방임과 괴롭힘 방지, ④ 디지털 침해 방지를 강조하고 있음
- 세이브 더 칠드런 노르웨이의 목표는 어떤 어린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폭력, 학대, 방치로 고통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함
- 이 기관은 피해자 조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는 바르나후스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심리치료를 직접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기관이라 함
-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까지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은 Norwegian Centre for Violence and Traumatic Stress Studies (Norwegian: Nasjonalt kunnskapssenter om vold og traumatisk stress, NKVTS)라고 함. 노르웨이 국가정부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며, nkvtshelp과 young violence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함
- 노르웨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성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기보다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로부터 저질러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함
- 노르웨이에서도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함. 따라서 이 기관에서는 실제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이용해 초등학교부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함.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이 얼마나 단단하게 교육 및 훈련이 잘 돼 있는가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함





## 6.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방문 및 심층면접

- 면담자 : Rolf Ring박사(Deputy Director, lawyer)
-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RWI)를 방문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형사법적 대응정책 자료수집 및 자문
- RWI는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비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이며, 증거기반 연구와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소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말 헝가리에서 위협에 처한 수만 명의 유대인 및 이외의 많은 사람들을 구한 스웨덴 외교관 라울 발렌베리(Raoul Wallenberg)의 이름을 따다고 함
-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체벌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로서, 체벌금지법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체벌하는 부모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아동에게 어떠한 폭력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을 중시하여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나 교육을 실시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체벌이 불법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함
- 스웨덴에서 체벌 금지는 1979년에 학교나 가정에서 일률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28년 중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원에서 체벌이 금지되는 등 연차적으로 이루어졌음. 특히 1971년 4살짜리 아이가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체벌금지법(Children and Parents Code 개정)에 이르게 됨. 이후 체벌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함.
- 스웨덴에서는 아동 및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체벌금지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아동 및 학생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여 그들의 인권보호에 있다는 것임
- 체벌에 대한 부모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Ⅲ.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도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폐지되어 모든 상황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바, 오래 전부터 체벌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자녀를 체벌하는 부모를 형벌로 처벌하여 체벌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어떠한 폭력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었음
- 노르웨이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럽인권협약을 기본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행동과 결정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이 되도록 해야 하며, 아동 양육과 관련된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아동복지법과 아동법에서는 7세의 아동 및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어린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 고지받고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추구하는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혼육 목적의 체벌과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979년 세계 최초로 체벌금지법이 시행된 스웨덴에서도 법 시행 이전에는 약 90%가 자녀를 체벌할 정도로 일반적이었으나 법 시행 후 2010년에 체벌하는 부모가 약 10%로 대폭 감소하였고, 40여년이 지나면서 현재의 사회분위기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폭언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체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부모상담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함
- 자녀 징계권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육을 위한 체벌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캠페인과 교육 및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법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IV. 첨부자료

1. 국외출장계획서

2. 수집자료

가. Act relating to child welfare(Child Welfare Act) : Norway

나. Residential youth care in Norway

다. 2022YEAR IN REVIEW(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